

『경부고속도로 북구미(가칭) 「하이패스IC 설치·운영사업」 동의(안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현재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구미IC와 남구미IC 2개소가 있으나, 구미구간 통행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하루 평균 2만 8천여대의 차량이 구미IC를 이용하는 등 진·출입구간에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,
- '14년 「제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」 하여 타당성 조사용역 평가 결과 「경제적 타당성」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,
- 금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「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(IC) 활성화 방안」 발표에 따라 하이패스 IC 설치 대상지 공모 신청하여 5월 4일 선정된 전국 사업대상지 15개소 중 북구미 IC가 사업대상지로 선정(국토교통부)되어,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우선 시행 사업대상지 6개소에 포함됨.
- 구미 관내 북부권의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「북구미(가칭) IC」 를 신설하고자 경부고속도로 북구미(가칭) 「하이패스IC 설치·운영사업」 에 대하여 구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할 경부고속도로 북구미(가칭) 「하이패스 IC 설치·운영사업」에 대한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※ 사업비 분담 및 사업시행은 「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(국토부, 2015.02.01 개정)」에 따라 시행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제8호

-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- 「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제1항제1호

-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1. 법령과 조례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무

- 사업명 : 북구미(가칭) IC 신설

- 사업위치 : 구미시 도량동 일원

- 사업개요

- 본선형 IC 2개소, 진·출입 램프(상·하행선 2개소) L=665m
- 연결도로(도시계획도로) L=375m[교량 L=40m 1개소 포함]

- 추정사업비 : 250억원(공사 108, 보상 122, 영업시설 20)
 - 사업비 분담 : 구미시(187억, 75%), 한국도로공사(63억, 25%)
- (※ 본 사업비는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)
- 년차별 사업비 분담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계	2015	2016	2017	2018	2019	비 고
사업비	18,700	300	1,000	6,000	6,000	5,400	

- 사업기간 : 2016. 09 ~ 2019. 12(3년간)
- 시 행 자 : 구미시, 한국도로공사
- 추진현황
 - '13. 10. : 북구미IC 신설 지역주민 요구
 - '14. 11. 25 :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(용역 준공 '15. 07. 22)

※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(조사기관 : (주)삼보기술단)

- 평가결과 :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
[B/C(비용편익비) 1.82, NPV(순현재가치) 185.5억원, IRR(내부수익율) 11.4%]

- '15. 2. 6 : 국토부 「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(IC) 활성화 방안」 발표
- '15. 2. 24 : 하이패스IC 설치 대상지 신청(시 → 경북도 → 국토부)
- '15. 5. 4 : 국토부 하이패스 나들목(IC) 「사업대상지 선정」 발표

※ 전국 하이패스IC 사업대상지 : 총 15개소(설계중 4, 추가 선정 11)

- 본 선 형(7) : **북구미(경부선)**, 유천(중부내륙지선), 검단(경부선),
삼교(영동선), 영사정(서울외곽선), 범서(울산선),
임고(대구포항선),
- 휴게소형(4) : 이천(제2중부선), 경산(경부선), 속리산(청원상주선),
충주(중부내륙선)

- '15. 7. 4 : 중앙투자심사 통과
- '15. 8. 12 : 한국도로공사 내부 예비타당성 평가 시행

※ 한국도로공사 예비타당성 평가결과 우선시행 지역(11개소 중 6개소)
[구미시(북구미IC), 대구시(유천IC), 울산시(범서IC), 충주시(충주IC),
보은군(속리산IC), 이천시(이천IC)]

○ 향후계획

- '15. 9월 : 의회 승인 및 협약 체결(구미시↔ 한국도로공사)
- '15. 10월 : 실시설계 용역비 납부(1회 추경 3억 확보)
- '15. 11월 : 실시설계 용역 착수(한국도로공사)
- '16. 9월 : 공사착공 예정(한국도로공사)

○ 기타사항 (북구미IC 이용가능 차량)

-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(하이패스 전용IC)
- 4.5톤 이하 화물차량(과적단속 곤란으로 차량 톤수 제한)

○ 위치도



5. 검토의견

- 본 경부고속도로 북구미(가칭) 「하이패스IC 설치·운영사업」 동의(안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 및 「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」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제1항제1호 (법령과 조례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」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무)규정에 따라,
-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할 경부고속도로 북구미(가칭) 「하이패스IC 설치·운영사업」에 대하여, 사전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최근 통행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하루 평균 2만 8천 여 대의 차량이 구미IC를 이용하는 등 진·출입구간에 병목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, 「북구미(가칭)IC」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한국도로공사 내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, 구미 관내 북부권 지역의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.